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6. 6. 23

행 정 위 원 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6월 5일 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22일 회부
다. 상정일자 : 2006년 6월 22일
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○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글맞춤법에 의한 법령제문 띄어쓰기 및 우리 구 직제 개편에 의한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제명 띄어쓰기 "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"를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"로 한다.
○ 제2조, 제6조제1항 중 "기획예산과"를 "총무과"로 한다.
○ 제4조제1항, 제6조제1항, 제7조 중 "기획예산과장"을 "총무과장"으로 한다.

다. 참고사항

○ 관련근거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(2005. 4. 6)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○ 합의사항 : 필요없음
○ 입법예고 : 생략
○ 사 유 :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규칙으로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변경임.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○ 본 조례안은 2006.3.23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및 2005.3.21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됨.

4. 審査結果 : 原案可決